
안전보건교육교재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2019. 5.



K I S I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안전관리원

TEL: 1588-8393 (代) FAX: (031)414-0725

<h1>안전보건교육일지</h1>		결 재	담 당	검 토		승인
2019 년 5 월 일						
교육구분	1. 신규채용자 교육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 교육 4. 정기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기타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구분	교 육 과 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재준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교 육 내 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란? 2. 근로자의 정의 3. 근로자의 판단기준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5. 산재발생에 따른 요양신청절차 6.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7. 산재보상과 민사배상과의 관계 8. 산재보상과 민사배상과의 차이 9. 재해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 교육평가 및 의견						
강 사 명					비 고	

안전보건교육참석자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안전보건교육참석자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51				76			
52				77			
53				78			
54				79			
55				80			
56				81			
57				82			
58				83			
59				84			
60				85			
61				86			
62				87			
63				88			
64				89			
65				90			
66				91			
67				92			
68				93			
69				94			
70				95			
71				96			
72				97			
73				98			
74				99			
75				100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란?

- ◎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근로자의 정의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의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3. 근로자의 판단기준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함
 - 1)사용종속관계 :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
 - 2)임금을 목적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함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구분	내용
업무상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구분	내용
업무상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5. 산재발생에 따른 요양신청 절차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

1.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
2. 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회사 또는 재해근로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
3.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
4. 질병이 직업성 암 등의 희귀질환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
5.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게 통보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1. 신청인(재해 근로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
2.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작성
3. 작성된 요양급여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급여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사업장)에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다만, 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요양승인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거나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재심사청구(행정심판)를 통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도



6.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2019년 기준)

구분	지급요건	지급수준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 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최고보상기준 : 1일 214,420원의 70% -최저임금(66,80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폐질등급 1~3급 해당자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평균 임금x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연금 :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만 지급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	연금 : 급여기초년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 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간병 1일당 27,450원
작업재활급여	장해1~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중으로서 장해1~12급이 명백한 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및 장해급여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 사업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여	직업훈련비용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 훈련과정 및 장애인 고용공단 위탁과정 : 정부지원승인 단가 전액 -그 외 산재보험 훈련과정 : 최대 600만원 직장복귀지원금:300,000원~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450,000원(월) 재활운동비:150,000원(월)

7. 산재보상과 민사배상과의 관계

◎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호프만 방식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나이, 과실률에 따라 정년퇴직 때까지의 잔여기간동안의 일실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정률보상방식인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하는 정액보상제도이다. 이와 같이 민사배상과 산재보상은 그 원리가 다름에도 그 동안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산재보상을 하면 당연히 민사배상을 해야 하며 그 배상액도 산재보상보다 훨씬 많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재사고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산재보상은 가능하지만 민사배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고라도 근로자가 정년에 가깝다거나 근로자 본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사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산재보상은 이와 상관없이 장해등급에 의하여 일정하게 보상한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젊고 과실이 없는 사고는 민사배상이 산재보상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나 제3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의금만큼 산재보상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에 산재보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기될 때에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기동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8.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차이

구분	산재보상	민사배상
근거	산재법 제5조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유무	책임(고의과실)질 사유 불요	책임(고의과실)질 사유 요함
주체	국가(근로복지공단)	가해자
연령과의관계	연령과 무관	연령과 관련
산정근거	요양급여: 산재법 제40조 휴업급여: 산재법 제52조 장해급여: 산재법 제57조 유족급여: 산재법 제62조	민사합의금
산정방식	<p>근로복지공단이 산재지정 병원에 지급</p> <p>요양, 휴업, 장해, 유족</p> <p>평균임금 70/100</p> <p>1~14 등급별 평균임금</p> <p>평균임금 1,420일본</p>	$\text{일실수입(60세까지 벌 수 있는 수입)} \times \text{노동력 상실을} \times \text{(회사과실율)}$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산재법 소정의 지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액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 민간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으로서 산재를 전제로 한다.	

9. 재해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구분	내용	
가. 병원 후송 및 현장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발생 시 환자의 상병 상태 정확히 판단 적합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 ○ 환자의 상태가 위급 하여 119 구급대 후송이 어려울 경우 책임자 지휘하에 신속 후송 ○ 현장 목격자 등 파악, 안전조치상 미흡 여부 파악, 필요한 경우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 	
나. 재해발생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는 사고 발생 보고를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해당부서에 보고 ○ 재해자가 의식 불명 등 중상일 경우 가족관계 파악 통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 대 재 해	다. 중대재해 보고	○ 중대재해 시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 지체없이 관할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보고
	라. 목격자등 진술확보	○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은 재해자 측과의 합의 또는 법률상 책임 처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발생 경위, 산업안전시설 및 상태, 사고당시 재해자의 근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함
	마. 입증자료 수집 및 보존	○ 산재보상 및 민형사상 책임 소재 등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입증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사건 해결시까지 보존하여야 함
	바. 관계기관 조사 및 서류제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및 관할 경찰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관계서류 모두 제출 - 근로복지공단 :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서류 일체 제출
	아. 재해자측 합의보상	○ 재해자 측 합의 당사자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합의 주체가 참여토록 함 ○ 합의금 산출 ○ 합의 도출에 따른 합의서 작성 : 공중 필요시 절차 진행

주1)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재해(산안법 제2조)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끝-